

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!

Q 신고포상금 제도란?

A

아동·청소년*대상 성매매 유인·권유·알선, 장애아동·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* 아동·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('18년 기준, '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
Q 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?

A

네,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.

다만,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,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,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.

Q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?

A

네,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해요.

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, 신고전화(☎112) 또는 경찰청 '안전Dream' 홈페이지(www.safe182.go.kr)에 신고해요.

Q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요?

A

수사기관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됩니다.

※ 지급신청서 작성

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→ 주제별정보 → 인권보호 →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(작성양식 다운로드)

※ 지급신청서 제출 : 메일 또는 우편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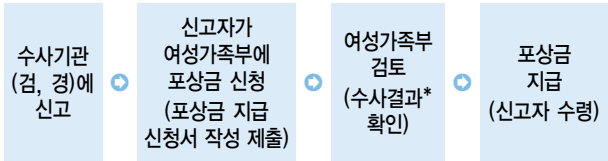
• 메일 제출처 : cyprotection@korea.kr
(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, ☎ 02-2100-6407)

• 우편 제출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우)03171

Q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A



* 포상금 지급조건 :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

Q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은?

A

포상금	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
1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(법률* 제8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·청소년을 간음(또는 추행)하는 범죄 -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·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(또는 추행)하게 하는 범죄 ■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(법률* 제1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요행위(폭행, 협박,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, 위계·위력, 업무·고용 등의 관계)를 통하여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- 영업으로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·권유한 범죄 -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 -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·권유한 범죄 ■ 알선영업행위 등(법률* 제15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·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(業)으로 하거나,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(業)으로 하는 범죄 -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·토지·건물을 제공하는 범죄 - 영업으로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·알선하는 업소에 아동·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
7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등(법률* 제13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 -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

* 근거법률 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 안내



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·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·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.

- 아동·청소년대상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, 성행위 강요,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, 알선영업행위 등
- 장애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,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
-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·배포 등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,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

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

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| 신고의무 대상기관 |

유치원, 학교, 의료기관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집, 학원 및 교습소,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, 한부모가족복지시설,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보호·재활센터



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Q 신고의무자 인가요?

A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어요.

Q 신고의무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A

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등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.

Q 신고를 하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?

A

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,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.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. ※ 안내전화 : 국번없이 110 또는 1366

Q 신고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?

A

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 책임자(시설장)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해요. 한편,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해 주세요.

※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책임자(시설장)나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.

Q 왜 빨리 신고해야 하나요?

A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·청소년의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요

Q 어디에 신고하나요?

A

수사기관(국번없이 전화 112,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)에 신고해요.

Q 신고 하게 되면 경찰관서에서 번거롭게 하나요?

A

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만 정확하게 진술하면 돼요. 불가피한 경우 전화 진술도 가능해요.

Q 혹시 신고가 망설여지나요?

A

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(국번없이 110 또는 1366)를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요.

